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03. 16권 1호 pp.61~74

미국 국가환경교육법의 효과, 쟁점 및 시사점

이선경 · *이재영 · *신호상 · **조길영 · ***최석진

(청주교육대학교 · *공주대학교 · **국회환경포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the U.S.: Its Effects, Issues and Implications

Sun-Kyung Lee · *Jae-Young Lee · *Ho-Sang Shin · **Kil-Young Cho · ***Suk-jin Choi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 **Environmental
Forum of the National Assembly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Abstract

It is essential to develop legal and legislative devices like 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to conduct systematic and continuous environmental educa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Australia, environmental education has been developing based on legal and legislative systems. Of those cases, the United States made efforts to promote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legislation, which ca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with intention to legislate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our environmental education by studying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PL 91 516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eatur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several amendments and re-approvals since the first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was legislated. The public hearing for the re-approval of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which was legislated in 1990 was held during the Summer of 2000. This gave us important reference data including the need of environmental education, its effects, and considering articles. As a result of the public hearing, 1990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was

recognized and some articles were amended. Its re-approved as John H. Chafee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2001, PL 107-S 876 I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rawn from the case study, which included the importance of related ministries, financial support, the role of Consult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for environmental educators,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certification system.

Key words :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I. 서론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환경교육을 활성화,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 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관련 부분이 확대되고, 중·고등학교에 환경 과목이 선택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었고, 민간 환경 단체들은 다양한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 1996년 3개 대학(현재는 5개 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 모두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법과 같은 법적 장치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제정과 이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 환경교육의 발전에 대한 사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및 호주 등의 환경교육 현황 고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Simmons, 2000; Gayford, 2000; De Haan, 2000; Heck, 2000).

먼저 호주의 경우 2000년 7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국가적 활동 계획'이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환경교육자문위원회(NEEC)를 설립하고 환경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되었다(Heck, 2000). 영국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학교 교육에 도

입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교과들 내에서 성취되어야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방법을 정부 문서인 Teaching Environmental Matters through the National Curriculum(Schools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SCAA], 1996) 내에 제시하였으며, 1998년에 환경·교통·지방국¹⁾은 교사, 학자, NGO는 물론, 산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심사위원단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게 된다(Gayford, 2000).

독일의 경우는 BLK-Programm 21(Bund-Länder Kommission Programm 21)에 의해 의제 21이 초·중등학교 영역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위임자는 '교육 계획과 연구 지원을 위한 연방 및 주 합동 위원회 (BLK)'이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16개 주 사이에 상설된 회의 기구로서 교육 체제 및 연구 지원과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이 계획은 5년간의 기한을 예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총 예산 12,500,000 US\$가 책정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종류의 단일 계획으로서는 거대한 액수에 해당된다. 이 자금의 절반은 연방 교육부가 출자하며, 나머지 절반은 참여하는 주가 담당한다. 독일 전체에는 대략 44,000여개의 학교가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들 가운데 극히 적은 숫자의 학교들만이 이 계획에 참가하게 된다. 2002년까지의 제 1 단계에서는 160에서 220여개에 이르는 학교들이 실험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숫자는 예정 기한의 마지막 2년간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목표로서는 궁극적으로 전체 학교의 10%를 계획에 참가시키는

1)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

것이다(De Haan, 2000).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는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환경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환경교육법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교육을 위한 기준이다.

국가환경교육법(EPA, 2001)에는 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을 위한 공식적 부서 설치, 그 부서내의 환경교육 전담자의 수, 환경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교육을 위한 재원, 대학생과 현직 교사를 위한 지원, 연방 차원의 자문위원회 설립, 환경교육 훈련 재단의 설립,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1990년에 미 의회는 정책적인 수준에서 국가환경교육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을 통과시키고, 이 국가환경교육법에 따라 미 환경보호국(EPA²⁾내에 환경교육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환경교육을 위한 연방정부 내의 공식적인 부서일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상당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그 법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원조금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제공하는 국가 환경교육 및 훈련재단(NEETF)을 설립하였다. 일부 주에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환경교육법률을 통과시켰다. 다른 주들은 주 또는 지역 수준에서 환경교육의 체계적

인 발전을 위한 목표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기본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다(Simmons, 2000). 그 결과 미국에서의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은 물론 사회 환경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법 제정을 통해 환경교육을 진흥하고자 노력한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례로 생각이 된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 제정과 관련된 역사와 현황, 특징, 효과 및 쟁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제정과 이의 환경교육적 효과에 관련된 사례 연구로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사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진 내부 논의와 국회환경포럼 환경교육활성

〈표 1〉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 사례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종류와 출처

자료의 종류	발간 연도	출처
국가환경교육법 자료	1990	http://www.epa.gov/enviroed/pdf/neea.pdf
국가환경교육법 시행 효과 점검 및 권고 사항	1996	http://www.epa.gov/enviroed/pdf/Report.pdf
국가환경교육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2000	http://www.epa.gov/enviroed/pdf/Rept2Congress.pdf
국가환경교육법 공청회 기록	2000	http://commdocs.house.gov/committees/edu/hedcew6-113.000/hedcew6-113.htm
국가환경교육법 수정안 (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	2000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7:1:./temp/~c107s303DB:e1307:

2)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

화위원회에서의 토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종류와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 자료는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 자료, 1996년 국가환경교육법 시행 효과 점검 및 권고 사항, 2000년 국가환경교육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2000년 국가환경교육법 공청회 기록, 2001년 국가환경교육법 수정안(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 등이며, 이들 모두 미국의 환경청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III.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미국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지난 세기 동안 여러 곳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발간된 이후 이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침묵의 봄」은 종종 이전의 보전 운동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환경운동의 촉매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환경운동은 인간의 경험 즉, 인간의 환경이 질을 강조하는 대중의 가치를 포함하면서 광

범위하고도 보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운동의 초창기에 다양한 연방정부 또는 주 수준의 법이 제정되어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이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L 91-190)과 1970년 10월 30일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PL 91-516)인데, 이들 두 법에서는 교육을 인간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EPA, 2001).

특히 국가환경교육법에서는 교육을 인간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교육감들에게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1972-73 회계연도까지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환경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환경교육국(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이 건강·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1974년 1차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에서는 1976-77 회계연도까지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1977년까지 환경교육자문위원회를 존치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1978년과 1981년에 2차 개정과 3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정 내용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재정 지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1979년 환경교육국

<표 2> 국회 청문회 증언 내용

증인	소속·직위	주요 증언 내용
Richard Anderson	매릴랜드 주 환경기업연맹 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사업장의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 환경교육연수재단과 대학 프로젝트 통해 환경교육 기회 획득 - 환경교육을 통해 규제를 충족하는 것 이상의 편익 발생 - 운영비의 감소, 작업 효율 향상, 경쟁력 제고, 작업 환경 개선
Deborah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교육법은 환경교육분야의 전문성 확립에 절대적 공헌 - 환경교육 기준,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전파하는데 기여 - 10만명 이상의 교사들에게 환경교육 연수 기회 제공 - 학생들의 환경 문제 분석,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향상
Walter M. Higgins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을 통해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설립 - 정부기구, 민간단체, 기업, 대학을 엮는데 공헌 - 법에 정한 기금(30억)을 바탕으로 민간 참여(40억) 유도, 확대
John Kasper	환경청 교육 및 대외협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정책 결정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제공 필수 - 환경청 내 환경교육국이 국가환경교육법의 집행 실무 책임 - 1천명 이상의 특별연구원 채용

을 새롭게 형성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레이건 정부의 연방정부의 역할을 주(State)로 양도시키는 정책에 따라 1981년 폐지하였다(이은주, 2001).

101번째 회기인 1990년 11월 16일 국가환경교육법(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PL 101-619)이 다시 제정되었다. 이는 1970년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연속선상에 있어 이 법의 목표를 재천명한 것이긴 하지만,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구체적인 실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환경교육법으로 거듭 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포함된 주 내용은 환경청의 예산 지원 승인, 환경교육연수프로그램과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설립 의무화, 환경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승인, 실습생 및 특별연구원 제도 도입, 환경청 내에 환경교육특별위원회 및 환경교육국 설치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예산 승인(정부 지출금에 대한 인가)는 1996 회계 연도로 만료되었으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과 정부의 요청으로 1999 회계 연도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은 10년 한시법이었으며, 따라서 환경교육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교육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8월 국회 청문회가 실시되어 이의 효과가 다각도로 논의되게 되었다. 이 청문회에서는 Richard Anderson(매릴랜드 주 환경기업연맹 총재), Deborah Simmons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Walter M. Higgins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대표이사), John Kasper (환경청 교육 및 대외협력부) 등이 각자와 관련된 단체 또는 입장에서 환경교육법의 효과를 증언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4인의 환경관련 대표 국회 청문회 증언 내용은 국가환경교육법의 제정 후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다시 논의될 것이나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청문회 결과 1990년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국가환경교육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2001년 6월 14일 '2001년 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John H. Chafee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2001, PL 107-S 876 IS)으로 재승인되었다.

IV.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내용과 개정 내용

1990년 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000년 9월에 제안된 국가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2001년 개정된 '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1. 국가환경교육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발췌

1990년 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보면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교육국,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환경교육 보조금,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환경교육상, 환경교육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국가 환경교육 연구 재단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법의 제목과 목차

1항. 제목 - 이 법은 "국가환경교육법" 이라는 명칭으로 인용될 수 있다.

2항. 목차

제2조. 배경 및 정책

1항. 배경 - 환경문제 심각 -> 국민 건강 위협, 자원 파괴
- 효과적 대응 위해서는 자연 및 인공 환경에 대한 이해, 환경 문제 및

3) 출처 : 국가환경교육법 <http://www.epa.gov/enviroed/pdf/neea.pdf>,
2001년 수정안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7:1:/temp/~c107s303DB:e1307>:

그 원인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필요

-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업무 능력 필요
- 환경, 환경문제, 해결책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노력 현저히 부족
-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불충분
- 환경청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필요

2항. 정책 - 전 학교 급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환경교육국(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 1항. 환경청 내에 환경교육국(4)을 둔다.
- 2항. 환경교육국의 역할
 -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출판물, 매체 자료 등 개발, 지원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 워크샵 등 개발·지원
 - 연방정부의 보조금 관리
 -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 환경상 운영
 -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인력 지원
 -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관련 기관에 환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 3항. 환경교육국의 구성
 - 국장, 본부 직원 6-10인, 지역 사무실에 상근 직원 1인

제5조.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 1항. 환경교육가를 양성, 지원하기 위해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
- 2항.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포함 사항

- 환경교육 및 학습에 대한 교실내 훈련, 현장 학습 및 평가관련 교수, 다인종 고려, 국제교류 후원과 관리, 환경교육 자료의 유지·지원, 환경교육 자료, 훈련 방법 등의 평가와 보급, 국제 세미나포럼 등 후원, 원거리 학습 지원 등

3항.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비영리기구의 설립과 그에 대한 예산 및 그 사용처에 대한 규정

4항.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

제6조. 환경교육 보조금

- 1항.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환경교육가 양성 및 연수를 위해 환경교육 지원금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
- 2항-4항.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적합한 활동과 프로그램
- 5항-7항.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제안서의 제출
- 8항-9항. 보조금의 범위

제7조.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 1항.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제공
- 2항.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의 목적
- 3항-4항.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의 범위와 관리
- 5항. 환경 수련생 제도의 기간과 보수 규정
- 6항-8항.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과 선정

제8조. 환경교육상

- 1항-2항. 환경교육상의 제정과 종류
 - 루즈벨트 상, 소로우 상, 카슨 상, 핀초트 상 등
- 3항. 환경교육상 수상자의 지명
- 4항. 환경 젊은이 대통령상 시행
- 5항. 수상 대상의 선정과 상금

제9조. 환경교육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 1항. 국가 환경교육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

4) 이는 환경청 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교육·매체국(Office of Communications, Education, and Media Relations, OCEMR)하에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교육국(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환경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환경매체국(Office of Media Relations)가 포함된다. 출처: <http://www.epa.gov/adminweb/ocemr/>

회 설립

- 2항. 자문위원회의 역할, 구성, 임기, 보수와 수당
- 3항. 특별위원회의 역할, 구성
- 4항. 자문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제10조. 국가환경교육연구재단 설립 (비영리 비정부단체임)

- 1항. 설립과 목적, 프로그램
- 2항. 이사회
- 3항. 재단의 권리와 의무
- 4항. 기부 조건
- 5항-6항. 행정 업무와 지원, 보고서
- 7항-10항. 지원자의 지위, 감사와 청원, 개정과 폐지 등

제11조. 예산 승인

- 1항. 예산 승인.
법 실행 위해 93년 120억불, 94년 130억불, 95-96년 140억불 사용.
- 2항. 예산의 배분과 사용
1990년 11월 16일 승인

2. 국가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국가환경교육자문위원회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의해 1996년과 2000년 9월에 법이 제정된 이후 이의 수행과정에서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제기되었다. 2000년 9월의 권고 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정책을 강화하라.

- 가. 적절하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1990년 환경교육법을 재승인하라.
- 나. 1990년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정 지원 등 관련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라.
- 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청(EPA)의 역할을 강화하라.
- 라. 법의 취지에 맞도록 연방 환경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라.

2)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

- 가. 국가환경교육신탁기금을 설립하라.
- 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별 지원금을 마련하라.

3) 주 수준의 환경교육 기관간 협조체제를 향상하라.

- 가. 국가 수준의 협조 체제 하에 주 별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모델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 나. 전자적 국가 환경교육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대하라.

4) 전 학교 급에서 종합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 가. 환경교육의 주요 개념과 기능을 학교 교육 평가 기준에 포함하라.
- 나. 환경교육의 주요 개념과 기능을 교사 자격 시험에 포함하라.
- 다. 미 고등교육협회는 환경연구, 교사연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과 환경교육을 통합하라.
- 라. 모든 교원이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라.
- 마. 환경교육 단체들과 다른 교육단체들 사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라.

5) 기존의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노력하라.

- 가. 환경교육연구강령에 열거한 여섯 가지 우선 과제를 실행하라.
- 나.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척도로 북미환경교육학회가 제안한 환경교육 최적화기준을 활용하여 국가환경교육인증체제를 수립하라.
- 다.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관계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라.

3. '2001년 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 개정 내용⁵⁾

2001년 5월 14일 심의를 통해 6월 14일 통과된 이 법은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주요 내용인 환경교육국, 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환경교육 보조금, 환경 수련생 제도와 장학금, 환경교육상, 환경교육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 이외에 존 H. 체이피 기념 장학금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을 국립환경학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테오도르 루즈벨트 환경 청지기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법의 각 조항은 청문회의 논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나 전체적인 골격은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에 근간을 두었다.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제1조. 제목

- 1항. 제목 — 이 법은 “2001년 존 H. 체이피 환경교육법(John H. Chafee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2001)” 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 환경교육국 (4조 수정)

- 1항 지원 앞에 '객관적이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건전하게' 삽입
- 2항 환경교육국의 직원과 활동 부분 수정

제3조. 환경교육 보조금 (6조 수정)

- 1항 25% → 15%
- 2항 로비활동에의 사용 불가, 안내지침 검토 등 내용 포함

제4조. 존 H. 체이피 기념 장학금 프로그램 (7조 수정, 명칭 변경)

- 1항 설립
- 2항 목적
- 3항 시상
- 4항 초점
- 5항 후원기관
- 6항 심사위원단의 개괄과 구성
- 7항-8항 기금의 분배와 조성

제5조. 국가환경교육상(8조 수정)

- 1항 환경 젊은이 대통령상
- 2항 교사상

제6조. 환경교육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9조 수정)

- 1항 자문위원회 구성원 등 수정
- 3항 특별위원회 구성원 등 수정
- 4항 회의와 보고서 등 삽입

제7조. 국립환경학습재단 (10조 수정, 명칭 변경)

- 3항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 등 수정

제8조. 테오도르 루즈벨트 환경 청지기 보조금 프로그램 (11조 추가)

- 1항 설립
- 2항 목적
- 3항 상
- 4항 운영
- 5항 기금 사용의 조건

제9조. 정보 표준 (12조 삽입)

제10조. 예산의 승인(13조 수정)

- 1항 개괄
- 2항 한도
- 3항 지출보고서

V.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시행 효과와 쟁점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는 2000년 8월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 청문회를 통해 국가환경교육법의 제정·시행 후 달성 가능한 효과와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논의로부터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5) 2001년에 통과된 이 법은 실명제의 차원에서 이를 제안한 의원의 이름을 써서 나타냄.

6) 환경교육법 수정안

1.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시행과 그 효과

미국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시행은 개략적으로 환경청내 환경교육국의 설치와 운영, 보조금(grants) 제도의 시행,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NEETF)의 설립 등을 포함한다. 환경교육국은 환경청내에 설치된 환경교육 전담 부서로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환경교육을 위한 보조금의 수여는 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가르치기 위한 환경교육가 양성, 환경 전문가를 위한 실습생과 연구원 후원, 환경교육상을 위한 기금, 기금의 운영과 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실제적인 진흥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인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은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관련된 전문가의 연수를 후원하여 공적·사적 영역간의 협력을 촉진하였다.

1) 국가환경교육법 하에서의 환경청의 활동과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⁸⁾

환경청(EPA)에서 지향하는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적으로 소양있는 시민(environmentally literate citizenry)의 양성이다.

EPA의 환경교육국은 환경교육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왔으며, 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장기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주 수준에서의 능력 배양 후원, 환경 교육과 교육개혁의 목적을 연계함으로써 환경 교육에서의 질과 양을 증진, 환경 교육에서의 연구를 촉진하여 환경 교육의 효과와 환경 보호와 교육 향상을 평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자원, 재료, 정보의 통합과 접근과 질의 향상, 마지막으로 대중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환경 교육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 등이다.

1992년 이래로 설치된 환경교육국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과 비영리기구의 컨소시엄을 통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십만 명이 넘는 최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국가 환경 교육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왔다.

② 이 법에서 EPA는 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는 책임감 있고 지식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제공하였다. 환경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어서 지출금 이상으로 기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모든 50주에 2천개가 넘는 보조금이 수여되었고 이 보조금은 총 2천만 달러가 넘는다.

③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계획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정을 통한 다양한 연방 파트너와 함께 했다. 40여개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으며 EPA 기금으로 4백20만 달러 정도를 분담하였고, 다른 연방기구와 그들의 주립, 지역 파트너로부터 천 이백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투자하게 하였다.

④ 학생 학습 향상과 환경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환경 교육 연구를 후원하였다. 우리는 또한 환경 문해력을 평가하고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 경제 인센티브와 비경제적 사회과학의 이용을 평가하는 연구를 후원하였다.

⑤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the National of Academy of Science와의 연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EPA의 인기 있는 웹사이트인 환경교육국 사이트 내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터넷 활동과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⑥ 학생들을 위해 대통령 환경 청소년 시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한 청년들을 선발하도록 하였고 환경 관리 연구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구비를 통해

7) 이 내용은 106번째 의회의 두 번째 회기인 2000년 6월 27일 실시된 국가환경교육법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출처: <http://commdocs.house.gov/committees/edu/hedcew6-113.000/hedcew6-113.htm>

8) 환경청 교육 및 대외 협력부 Mr. Kasper의 증언을 기초로 함.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의 기금 활용과 운영⁹⁾

1990년 인가된 국가환경교육법으로 국가환경
교육연수재단이 만들어졌으며 이 재단은 독립적
인 비영리기구이고 공적, 사적 파트너십을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재단은 연수를 촉진하
고 EPA의 환경교육국과 함께 모든 미국인의 환
경적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정규적인 교육
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 때, 연수 프로그램 이용 대상은 공립학교
학생, 의사와 간호사, 중소기업 등 미국인 전반
인데, 여기에는 환경을 이용하여 공립 K-12 학
교에서의 학문적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환경 교육
을 실시하여 높은 질과 보다 비용-효과적인 건
강관리를 이끌어내며, 5백여만 개의 소사업체
에서의 환경 수행을 향상시켜 보다 경쟁적이고 이
윤이 나게 하도록 돕고, 미국인에게 수질과 자연
자원에 관한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
인의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법인 환경 상담제도(Institute for
Corporate Environmental mentoring)는 큰 환경
기업이 종종 대기업의 공급책과 고객 기초 부분
에서 소기업을 상담하는데 이용된다. 이는 교육
과정 패키지와 미국 전역의 1200 지역 전문대를
통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네트워크(mentoring
network)를 개발해왔다.

국가환경교육법의 중요한 힘은 연방기금(seed
money)을 민간 기금과 협력하여 투자하도록 이
용하는 것이다. 이 임무의 일부로서 NEETF와
환경청의 환경교육국은 이 법을 통한 기금을 미
국 전역의 기구에 주는 환경 교육 보조금에 이
용한다. NEETF는 300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
급하여 연관된 민간 기금에서 410만 달러를 지
원하도록 하였고 현재 보조금 프로젝트가 완성

되면 600만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즉 재단
이 주는 보조금은 연방달러 1달러당 비 연방달
러 2달러로 구성된다.

3) 국가환경교육법이 환경교육 분야의 전 문화에 가지는 중요성¹⁰⁾

이 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가진, 연령에 적
절한 환경 교육과정 표준(standards)과 교재를
촉진하고 계획하고 유포하게끔 한다. 이 법을
통해 제공받는 기금으로 매년 십만 명이 넘는
교사가 전문적 연수를 제공받고 있다.

1996년에 국가환경교육법 5조의 기금과 '환경
교육과 연수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북미환경교육
학회(NAAEE)에서 환경교육 지침을 개발하였
다. 이 지침은 과학교사협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교육과정 개발과 감독
협회(th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사회과학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미국 과학
진흥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등의 주, 지역, 국가
기구의 3,0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개발된 것이
다. 이 지침은 각 학구, 학교, 교사들이 그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방
식과 교재의 적절성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은 학습에 학습자를 활발히 끌어
들임으로써 교실에서 차이를 보인다. 환경교육
은 학생으로 하여금 주변 세계에 대해 발견하도
록 장려한다. 과목에 집중하는 학생은 더 잘 학
습하고 과제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
다.

② 부모는 환경교육을 지지한다. NEETF와
Roper Starch Worldwide의 1998년 조사에 따르
면 96%의 부모가 아이들의 교실에서 환경교육
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 환경교육은 학생
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
할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치 있다.

9)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의 Mr. Higgins의 증언을 기초로 함.

10)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Dr. Simmons의 증언을 기초로 함.

4) 법인 상담제도의 지역전문대 네트워크로 소기업에 이익 제공¹¹⁾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은 법인 환경상담제도를 통해 1200개 지역 전문대 네트워크에서 소기업 소유자와 고용자들에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법인 환경상담제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80%는 10명 이하의 고용인을 두고 있으며 97%는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다. 환경교육은 지역적으로 기업 소유자에게 연수를 위한 비용을 저감할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환경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예상되는 성과는 소기업들은 운영비용(operation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적응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2. 쟁점에 대한 논의

국가환경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환경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시사점을 가지므로 논의된 중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정 관점 반영에의 우려

청문회에서는 국가환경교육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환경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관점만을 반영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물론 환경청이 환경 옹호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¹²⁾, 이에 대해 환경청에서는 균형잡히고 과학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침을 개발하고, 공

평성, 정확성, 그리고 건전한 교육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지원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환경청의 확인 과정은 평가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균형 있게 환경 이슈를 제시하고 특정한 입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야만 하고, 10만 불 이상 지원 받는 경우 보조금을 로비에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¹³⁾.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에서도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안 단계에서 지원대상자들이 하려 하는 것이 과학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학습자나 전문가에게 보다 많은 정보, 보다 완벽한 정보, 보다 정확하고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학습자와 지도자 그리고,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¹⁴⁾고 하였다.

한편 환경교육 지침 등을 개발할 때는 ‘비평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최근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질 높은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환경교육계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팀(writing team)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기업가, 과학자, 교사, 대학교수, 교육부 사람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교육계와 과학계의 사람들한테 지침의 초안을 보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¹⁵⁾.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쟁점의 양면 모두를 제공해서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¹⁶⁾에 대해 지침에서는 공정성, 정확성, 균형성, 탐구의 필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질문을 가지도록 하는 개방성, 그리고, 교실 안에서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음¹⁷⁾을 밝혔다.

2) 환경교육 주관 부처

환경교육의 주관 부처는 처음 제안된 법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육부에 있는 것이 더 적합

11) 매릴랜드 주 환경기업연맹 총재 Mr. Anderson의 증언을 기초로 함.

12) Mr. Payne (하원의원)

13) Mr. Kasper (환경청 교육 및 대외 협력부)

14) Mr. Higgins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15) Dr.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16) Chairman Castle (소위원회 의장)

17) Dr.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하다는 지적이 있어서¹⁸⁾, 이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앞서 환경교육법의 역사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존재하던 모든 형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했으며,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부시(Bush) 대통령과 환경청장인 릴리(Riley)가 함께 의회에 제안해 1990년에 국가환경교육법을 통과시키고, 환경교육 주관 부처를 환경청안에 두게 되었다¹⁹⁾. 따라서, 환경청 내에 있는 환경교육국은 환경적으로 정확하고 교육적으로 적합하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꾸준히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²⁰⁾.

3) 환경청을 통한 보조금 지급 관련

그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청을 통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로, 이 프로그램은 의회로부터 보조금으로 책정된 7백만 달러를 받는데, 만약 미국 내 학교를 위한 일반 정부지원프로그램(the general appropriations programs)을 통해 그 돈을 교실에 줄 수 있다면, 환경청을 통해 쓰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교실에서 직접 쓰이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의문²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 돈은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쓰이는 돈과는 다르며, 이것은 환경교육에 쓰이고 환경교육은 교육을 발전시킨다. 즉,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생들의 과학, 수학,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나 대화 기술을 발달시키고,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을 통해 돈은 교실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서, 결국 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주장²²⁾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의 Mr. Higgins는 환경청이 환경교육국을 통해서 돈을 보냄으로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민간 기부금

도 작년 한 해 동안 1달러 당 15달러를 만들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돈을 교실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환경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4) 기존의 교육 과정 및 학업 성취와의 관련

환경교육이 왜 기존의 과학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며 기존의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²³⁾에 대해 환경교육의 대부분은 과학에 속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며, 따라서, 환경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걸쳐 삼입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은 과학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있어 수학, 영어, 읽기나 쓰기 같은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과학이나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력이 신장되기 때문²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문회 자료 이외에도 다른 환경교육자들의 연구(Fortner, 2001)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다.

한편 환경교육이 학업 성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²⁵⁾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환경교육은 읽기 능력 신장과 수학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을 통해 연관성을 찾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실제 세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 과학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며, 똑똑한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²⁶⁾.

18) Mrs. Mink (하원의원)

19) Mr. Higgins (국가환경교육연수재단)

20) Mr. Kasper (환경청 교육 및 대외 협력부)

21) Mr. Schaffer (하원의원)

22) Dr.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23) Mr. DeMint (하원의원)

24) Dr.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VI. 시사점 및 제언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90년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교육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환경교육국, 환경교육연수재단, 보조금 제도 등의 환경교육 활성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가칭)의 제정과 관련하여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환경교육 전담 부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는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체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부 또는 환경부에 설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와 환경부에서 서로 분담하고 있어서 학교 환경교육의 경우는 주로 교육부에서, 사회 환경교육은 주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교육부에 설치되었던 환경교육국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 제정시에 환경부로 옮겨 설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환경 단체와 관련된 사회 환경교육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과 환경부의 민간환경협력과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경교육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면 환경부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환경교육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제도교육의 틀을 넘어서 환경교육 소재, 장소, 대상자 등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에 관한 것이다.

환경교육국의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환경교육 지도자를 위한 연수, 보조금 지원 등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환경교육 기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 실정에서 가장 가능하게 보이는 대안은 환경세를 통한 환경교육 재원의 확보이며, 이것 이외의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 측면에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교육부의 지방교부금 등을 이용한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형태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환경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환경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교육 진흥에 관련된 많은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 제정 후 환경교육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학교-사회 환경교육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자문,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 유지,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등 실제적인 일을 수행할 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등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들 이외에도 국가환경교육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형식에 대해서는 집단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또한 그 결과 못지 않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쟁점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환경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소양있는 시민을 길러내

25) Mr. Kildee (하원의원)

26) Dr. Simmons (전 북미환경교육학회 회장)

기 위한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전망은 희망적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이은주(2001). 환경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미국 환경교육법 사례를 통해. 미발표 원고

De Haan, G. (2000). Strategies currently in use to strengthen environmental education in schools of Germany. In 최석진, 이선경, 주형선, 이용순, 박종성(2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 환경교육. 119-137.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1).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n line] available at <http://www.epa.gov/enviroed/pdf/need.pdf>

Fortner, R. (2001). Shaping the Environment of the Future: Innovations in Thinking and Practice for Educator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eminar on Environmental Education, Seoul, Korea.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9-240

Gayford, C. (2000). Environmental Education in Schools in the UK. In 최석진, 이선경, 주형선, 이용순, 박종성(2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 환경교육. 150-165.

Heck, D. (2000). Subject 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in Schools of Australia. In 최석

진, 이선경, 주형선, 이용순, 박종성(2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 환경교육. 178-191.

Schools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SCAA] (1996). Teaching environmental matters through the National Curriculum. London: HMSO.

Simmons (2000).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Subject Based Curriculum : A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In 최석진 · 이선경 · 주형선 · 이용순 · 박종성 (2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 환경교육. 138-149.

<미국 국가환경교육법 관련 자료>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
<http://www.epa.gov/enviroed/pdf/need.pdf>

1996년 국가환경교육법 시행 효과 점검 및 권고 사항
<http://www.epa.gov/enviroed/pdf/Report.pdf>

2000년 국가환경교육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http://www.epa.gov/enviroed/pdf/Rept2Congress.pdf>

2000년 국가환경교육법 공청회 기록
<http://commdocs.house.gov/committees/edu/hedcew6-113.000/hedcew6-113.htm>

2001년 국가환경교육법 수정안(존 H. 체이퍼 환경교육법)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7:1:/temp/~c107s303DB:e1307>